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(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)

1.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.

사용료등 =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(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) ×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× 기본율

- 2.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 신청자가 생산·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약정수량을 초과하 여 생산·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.
- 3.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,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,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.
- 4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 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